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사회복지사/배성애

문 수 호 마 을

1. 노인인권과 학대

(1)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인권: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삶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노인인권보호(노인복지법 제2조)
 - *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노인학대의 개념
 -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학대유형 및 대처방안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노인의 신체를 학대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 뜯는다.
	- 벽에 신체를 부딪치게 한다.
노인의 신체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다.
	-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채우기, 손발 묶기
	- 체위변경을 하지 않아 욕창이 생겼다.
	- 기저귀를 교체해주지 않아 피부질환이 생겼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노인이 비위관(콧줄)을 자주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을 위협하는 언어적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시설에서 나가라 등의 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뭐라고?”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노인과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되며, 직원교육을 통해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빚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 입소자 목록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배치표를 골뎠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어르신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 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깝울 따름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5) 방임

-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청결유지 또는 환경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 보실래요?”“.....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먼저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대해서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주의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6)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남용을 지속한다.

7)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학대행위	세부학대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에방 및 대응방법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노인학대 관련 처벌규정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5)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 학대행위자

3. 노인학대관련 서비스

노인전문보호시설운영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서 34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 인학대신고접수: 노인학대 긴급전화 (1577-1389) 혹은 129
-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